

울산광역시중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 |
|----------|-----|-------------------------------------|
| 의안 번호 | 643 | 제출년월일 : 2008. 9. 제 출 자 : 중 구 청 장 |
|----------|-----|-------------------------------------|

1. 개정이유

울산광역시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울산광역시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위원의 자격요건 등이 유사하여 관련 조례를 통합 운영함이 타당하여 기 제정된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제명 개정 : “울산광역시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 나. 유사조례 통합에 따른 조례 목적 일부정정(안 제1조)
- 다. 위원회의 기능 추가
 -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2조 제5호)
 -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2조 제6호)
 -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2조 제7호)
 - 그 밖에 구민건강증진시책, 지역보건의료시책 등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안 제2조 제8호)
- 라. 위원의 임기에 관한사항 일부정정(안 제4조)
- 마. 위원의 해촉 규정 신설(안 제5조)
- 바. 위원회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때에는 의견청취 등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8조)
- 사. 심의·자문 결과 처리 규정 신설(안 제10조)
- 아. 울산광역시중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폐지(안 부칙 제3항)

3. 근거법규

-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제5항

4. 전면개정 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2008. 6. 2 ~ 6. 23)

울산광역시중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울산광역시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울산광역시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구민건강증진 시책의 세부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구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3. 구민건강생활실천운동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시정 및 변경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5.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6.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7.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구민건강증진시책, 지역보건의료시책 등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은 지역사회주민, 공공기관과 학계, 언론계, 보건의료관련단체, 사회단체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와 보건소장이 된다.
-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과장이 된다.

제4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해촉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 (회의 등)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과 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9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중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심의 · 자문결과 처리) 구청장은 위원회가 심의 ·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행정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위촉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울산광역시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촉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 ③ (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중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근 거 법 규

□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

1. 지역주민
2.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3. 보건의료관련전문가
4. 관계공무원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기타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의안심사보고서

(의안번호 643)

1. 의안명 : 울산광역시중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08. 9. 9(화)
- 나. 제출자 : 중구청장
- 다. 위원회 회부 : 2008. 9. 16(화)
- 라. 위원회 상정 : 2008. 9. 23(화)

3.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보건소장)

울산광역시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울산광역시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위원의 자격요건 등이 유사하여 관련 조례를 통합 운영함이 타당하여 기 제정된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함

4. 주요골자

- 가. 제명개정 : 울산광역시 중구 건강 생활실천 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명칭변경)
- 나. 유사조례 통합에 따른 목적 일부개정(안 제1조)
- 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기능 추가(안 제23조 5호~8호)
 - 위원회의 임기에 관한 사항 일부 정정(안 제4조)
 - 위원의 위촉 규정 신설(안 제5조)
 - 위원회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때에는 의견청취 등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10조)
- 라. 울산광역시중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폐지(안 부칙 제3조)

5. 관련법규

-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5항

6.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최대림)

- 국민건강법 제10조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제정된 울산광역시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울산광역시중구 지역보건심의 위원회는 기능이 유사하여 정부의 유사기능 위원회 통합방침 추진과도 뜻을 같이 하므로 통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만, 울산광역시중구 지역보건심의위원회들의 신분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이 요구됨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8. 수정내용

| 원 안 | 수정안 |
|--|---|
| 부 칙 | 부 칙 |
| <p>①(생략)</p> <p>②(위촉위원에 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울산광역시중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촉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날로부터 기산한다.</p> | <p>①(생략)</p> <p>②----- -----과 「울산광역시중구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위촉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해촉한다.</p> |
| ③(생략) | ③(생략) |